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체 육 인 복 지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한 체육인 복지법이 개정되고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체육인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체육인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마련
(시행령 제5조의2 신설)

- 1)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시책에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체육인을 위한 복지증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 체육인을 위한 공정한 활동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체육인을 위한 복지증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체육인을 위한 공정한 활동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2(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시책) ①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u>1.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u> <u>2. 체육인을 위한 복지증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u> <u>3. 체육인을 위한 공정한 활동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인권복지과	
연 락 처	(044) 203 - 3196